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1-28
----------	---------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일

제출자 : 미래경제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재난, 필수노동자, 필수업종, 대면업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마.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해당 기관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 2. 17. ~ 3. 9.) 결과: 의견 없음

2) 사전검토 완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서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지정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강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4. 작성자 : 미래경제국 일자리정책과 과장 염철하

(담당 : 행정8급 김민진 / ☎ 2600-6562)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1 - 5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이경민
입안주무부서	일자리정책과	통보(조치)일		2021. 3. 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서울강서004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담당자명	김민진	전화번호 02-2600-65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2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b>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b>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일자리정책과장 귀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